

	<h1 style="margin: 0;">직제규칙</h1>		규정번호	3-1-3
			제정일자	1998.01.01
			개정일자	2018.06.15
			개정번호	Ver.20
			총페이지	6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 및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에 의하여 본 대학의 조직 및 구성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행정의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0.11.>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대학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, 정관, 학칙 및 기타 본 대학의 각종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.

## 제 2 장 조 직

**제3조(기구)** 본 대학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09.10.1., 2010.4.1., 2011.1.1., 2012.10.11., 2013.6.1., 2013.9.11., 2014.4.9., 2015.3.1., 2015.9.1., 2018.4.1.>

**제4조(정원)** 본 대학 교직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시행령, 기타 시행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 3 장 구성원

- 제5조(교원, 일반직원 및 조교)** ① 본 대학에 총장,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.  
 ②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강사로 한다. <개정 2012.10.11.>  
 ③ 일반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으로 한다. <개정 2015.9.1.>  
 ④ 제2항의 교원 이외에 필요에 따라 초빙교원, 산업체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6., 2012.10.11.>

## 제 4 장 기 구

- 제6조(총장 등)**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 
 ② 본 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.  
 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 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 
 ④ 총장, 부총장 유고 시는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각 부서의 장 등)** ① 제3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0.11., 2015.9.1.>

1. 처장,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겸보한다.
2. 학부(과)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3. 사무처장은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.

② 팀장은 일반직 7급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06.12.26., 2015.9.1.>

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**제8조(교학처)** ① 교학처에 교무부처장과 학생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입시관리팀, 교육운영팀, 학생지원팀, 학생서비스센터를 둔다.<개정 2010.5.1., 2013.6.1., 2013.9.11.>

② 교학처에 두는 각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삭제 <2013.9.11.>

**제8조의2(학생서비스센터)** ① 학생서비스센터장은 학생부처장이 겸하며 학생지원팀 업무와 학생관련 제 민원업무(학생서비스센터 업무), 보건실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0.5.1., 2013.6.1.>

② 학생서비스센터에 두는 직원의 수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의 현원으로 한다.

**제8조의3(교수학습개발센터)**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0.5.1., 2013.9.11.>

**제9조(산학협력처)** ①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산학협력지원팀과 취업창업지원팀을 둔다 <개정 2013.6.1., 2013.9.11., 2014.4.9.>

② 산학협력처장의 업무는 산업기술연구소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처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0조(기획처)** ① 기획처에 기획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기획예산팀과 인사관리팀을 둔다. <개정 2013.4.1., 2013.6.1., 2013.9.11.>

② 기획처에 대학기획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.

③ 삭제 <2013.4.1.>

④ 기획처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사무처)** ① 사무처에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총무팀, 관리영선팀, 경리팀을 둔다. <개정 2013.9.11.>

② 사무처에 두는 각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종합정보지원실<개정 2006.12.26.>)** ① 종합정보지원실에 정보지원팀을 두며 종합

정보지원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
- ② 종합정보지원실에 두는 팀의 현원은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삭제 <2006.12.26.>

**제12조의2(중앙전자계산소) 삭제 <2006.12.26.>**

**제12조의3(부속 및 부설기관 등) ①** 본 대학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현원은 법인 정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(교수회) ①**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둔다.

-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2.10.11.>
- ③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에 의한다.

**제14조(위원회) ①** 본 대학 운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5조(부속시설 등) 삭제 <2006.6.20.>**

**제16조(임기) 교원으로 겸보하는 각 부서의 장의 임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6., 2015.9.1.>**

1. 부총장 및 대학본부 각 처장(사무처장 제외), 학부(과)장,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2. 각 부서 및 학부(과)의 하부 조직 책임자(일반직 제외)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 5 장 업무 분장**

**제17조(업무분장 및 위임 전결)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은 총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**

**제 6 장 개정 절차**

**제18조(규칙의 개정) ①** 이 규칙의 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 <신설 2018.06.15.>

-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[별표] 기구 조직표'만의 개정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다. <신설 2018.06.15.>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) 제5조 제2항, 제13조 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(강사에 대한 경과조치) 제5조 제2항, 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팀의 개편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및 기술창업지원센터의 존치기간) 제3조(기구) 및 별표(기구조직표)에도 불구하고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및 기술창업지원센터는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존치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의 존치기간) 제3조(기구) 및 별표(기구조직표)에도 불구하고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존치한다.

[별표] <개정 2018.4.1.>

## 기구 조직표

